[對外秘]

서울중앙 수석부장판사 재편 방안

2016. 3. 26.	인사총괄심의관실

I. 검토 배경

▣ 법관사회 **내부 소통의 중요성** 갈수록 증가

○ 법관사회의 내부 환경의 변화 ⇨ **세대, 성별, 출신의 스펙트럼 다양화**로 내부적 동질감 희석되어 새로운 갈등양상 형성되고 있음

- 합의부 재판장 vs 배석판사
- 남성 판사 vs 여성 판사
- 연수원 수료 판사 vs 법전원 졸업 판사
- 이른바 왕당파 vs 사법행정 비판세력

○ 이러한 법원 공동체 내 갈등 요소의 확대를 방지하고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소통의 중요성 날로 높아지고 있음

▣ **수석부장판사**의 **내부 소통 핵심 역할**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

○ 최근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회원 중심으로 **판사회의 활성화** 움직임 ⇨ 판사회의 운영을 둘러싼 **법관사회 내부 갈등** 우려 및 판사회의 의결을 통한 **법원장의 사법행정권 견제, 도전** 예상

○ 수석부장판사가 법관사회의 구심점으로서 **내부적 통합**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소속 법원 **법관들과 법원장 사이에서 가교**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발휘해야 함

▣ **서울중앙지법 비대화**로 **3인 수석부장 체제 한계**에 달함

○ 2016. 3. 현재 서울중앙 가동법관 337명

- **민사부**의 경우 판사 수가 **220명**에 달함(4. 1.자 신임법관 포함하면 230명)

○ 내부 소통 핵심 역할, 법원장과 법관들 사이의 가교 역할 수행 어려움

II. 수석부장 제도 개관

1. 법적 근거

▣ 법원조직법

제26조(고등법원장) ①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. ② 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. ③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**사법행정사무를 관장**하며, **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**한다. ④ 고등법원장이 **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**에는 **수석부장판사**,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**권한을 대행**한다. ⑤~⑥ 생략 **제29조(지방법원장)** ①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. ② 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. ③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, 시·군법원 및 등기소의 **사법행정사무를 관장**하며, **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**한다. ④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**제26조 제4항**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**준용**한다.

2. 인사발령 및 보임관행

가. 인사발령

▣ **대법원장의 인사발령**으로 직접 지정함 ☞ 각급법원의 사무분담 사항 ×

▣ 일부 지방법원 수석부장은 고법부장 중에서 보임함

○ 「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」

- **서울중앙, 인천, 수원, 대전, 대구, 부산, 광주** 지방법원의 수석부장 ⇨ 고법부장

○ 직무대리

- **서울가정, 서울행정** ⇨ 서울고법 부장에 대하여 직무대리 발령

○ 겸임

- **제주** ⇨ 광주고법 제주부 부장에 대하여 겸임 발령

○ 나머지 지방법원 수석부장은 지법부장 중에서 보임함

나. 지법부장인 수석부장 보임 관행

▣ 서울 시내 지법

○ 중앙지법 거친 소속 부장 중에서 적임자 선발·보임

○ 과거 소속 부장 중 최선서열자를 보임한 시절이 있었으나, 현재는 기수,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발·보임하고 있음. 기수 역전 사례 있음

○ 대체로 2년 근무 원칙 아래 운영. 다만, 고법부장 보임, 사직 등으로 1년 근무 사례 다수임

▣ 지방권 지법

○ 대체로 지역거점법관 중 적임자 보임. 기수 역전 사례 있음

○ 춘천, 제주는 소속 부장 중 최선서열자 보임 관행(2년차 부장)

- 다만 2015년부터 제주지법 수석부장은 광주고법 제주부의 부장이 겸임

○ 대체로 2년 근무 원칙 아래 운영(춘천, 제주는 제외)

3. 권한 및 역할

가. 법령에 따른 권한

▣ 법원장 권한대행

○ 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(법원조직법 §26④ 등)

나. 예규 등에 따른 권한

▣ 법원장 위임받아 사건배당 주관

○ 사건배당은 각급 법원장이 주관하나,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음(「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」 §9①)

▣ 기타

○ 각급 법원 국선변호 운영위원회 위원장(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§23③)

○ 개인파산 등 사건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위원장(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§24②)

○ 지방법원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(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§3①)

○ 해외연수선발위원회 위원 자격(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§5의2②) ☞ 지방법원 수석부장 중 법원행정처장이 2명 지정

○ 지방법원 법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(법무사규칙 §47②)

다. 각 법원 위임전결 내규에 따른 권한

○ 각급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, 그 위임전결사항은 당해 기관의 내규로 정함(법원사무관리규칙 §16②)

라. 사실상의 업무 영역 및 역할

▣ 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보좌

○ **법관 및 재판과 관련된 사법행정사무**에 관하여 법원장의 **참모** 역할 ☞ 법령이나 내규에 명시적 근거규정이 있는 것은 아님

○ 각종 **기획 업무의 실무 총괄**

▣ 소속 법원 법관들과 법원장 사이에서 가교 역할

○ 법관사회의 구심점으로서 **내부 소통** 핵심 역할

▣ 법관 및 재판연구원 **평정, 사무분담 등의 초안** 작성

▣ 각종 실무연구 등 재판 관련 **연구회 총괄**

III. 지방법원 수석부장 현황

지방법원		수석부장				판사 수(2016. 3. 1. 기준 가동법관)			
		성명	기수	직위	사무분담	고법부장	지법부장	판사	합계
중앙	민사	김○○	17	고법부장	신청합의(임시지위)	1	55	164	220
	파산	김○○	18	고법부장	법인회생	1	3	27	31
	형사	신○○	19	고법부장	합의 형사신청	1	26	59	86
서울가정		허○○	18	고법부장	가사항소/항고	1	7	28	36
서울행정		이○○	18	고법부장	행정합의	1	10	31	42
서울동부		염○○	20	지법부장	신청합의		18	48	66
서울남부		심○○	22	지법부장	신청합의		20	59	79
서울북부		오○○	21	지법부장	신청합의/민사항고		14	45	59
서울서부		이○○	20	지법부장	신청합의		14	44	58
의정부	본원	홍○○	21	지법부장	파산부		24	53	77
	지원						10	25	35
인천	본원	김○○	19	고법부장	법인회생파산	1	29	77	107
	지원						8	20	28
인천가정		수석부장 없음					3	7	10
수원	본원	배○○	19	고법부장	법인회생파산/회생항고	1	43	95	139
	지원						31	93	124
춘천	본원	김○○	28	지법부장	민사합의/신청합의/도산합의		10	13	23
	지원						11	22	33
대전	본원	차○○	23	고법부장	법인회생	1	29	48	78
	지원						15	39	54
대전가정		수석부장 없음					2	5	7
청주	본원	양○○	21	지법부장	법인회생파산/행정합의		15	21	36
	지원						3	12	15
대구	본원	임○○	20	고법부장	법인회생파산	1	38	50	89
	지원						20	44	64
대구가정		수석부장 없음					3	6	9
부산	본원	박○○	19	고법부장	신청합의	1	37	69	107
	지원						7	12	19
부산가정		수석부장 없음					4	7	11

지방법원		수석부장				판사 수(2016. 3. 1. 기준 가동법관)			
		성명	기수	직위	사무분담	고법부장	지법부장	판사	합계
울산		손○○	22	지법부장	신청합의/도산합의		20	26	**46**
창원	본원	정○○	22	지법부장	신청합의/민사항고		25	33	**58**
	지원						13	29	**42**
광주	본원	최○○	20	고법부장	법인회생파산/파산항고	1	30	39	**70**
	지원						14	25	**39**
광주가정		수석부장 없음					2	5	**7**
전주	본원	박○○	21	지법부장	가사항고/항고		17	23	**40**
	지원						7	14	**21**
제주		마○○	23	고법부장	광주고법 제주부/법인회생파산		9	13	**22**

* 법원장은 제외하되, 다만 인천·대전·대구·광주가정은 법원장을 지법부장 인원에 포함

Ⅳ. 현재 서울중앙 수석부장 체제 문제점

1. [근본원인] 민사수석부장 재판업무 및 소속법관 과다

▣ 재판업무 과다

○ **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사건 중 주요 사건** 및 **비송합의** 사건 등을 담당

- 서울중앙의 경우 임시지위가처분 사건은 인도단행, 공사금지, 처분금지, 접근금지, 지급금지, 서류열람등사, 단체 분쟁, 시위금지, 경업금지 등에 한하여 민사51부에서 담당하고, 나머지 주요 사건은 민사수석부인 민사50부에서 담당하고 있음

○ 접수 건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**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**,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어 **심하게 다투는 사건, 선례가 없는 사건** 등이 적지 않음

- 약 60%의 사건은 각 배석판사가 수명법관으로 심문기일을 진행하나, 나머지 주요 사건은 **매주 1회 민사수석부장이 직접 재판장으로 심문기일**을 진행하고 있음
- 임시지위가처분 미제는 평균 150건 내외로 관리되고 있으며, 2015년에 월 평균 47건 정도의 결정을 하였음
- 사건의 약 40%는 지적재산권 관련 가처분 사건임

▣ 소속법관 과다

○ 민사부 판사 수는 총 **220명**에 달함(4. 1.자 신임법관 포함 시 230명)

○ 고법부장이 수석부장을 맡고 있는 지방법원 **평균(100명, 제주 제외)의 2.2배** 해당

2. [문제 1] 내부 소통 한계

▣ 단독판사회의 활성화 ⇨ 내부 소통 필요성 증가

○ 기존 사법행정에 비우호적인 31박○○ 판사(회생단독)가 경선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어 판사회의 활성화 예상

○ 판사회의를 통해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견제하려는 시도(예컨대 희망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무분담 기본원칙 의결)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, 그 밖에 사법행정 현안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집단적으로 제시할 가능성 있음

○ 수석부장이 **단독판사들과 회식 자리** 등을 자주 가지면서 **단독판사들의 솔직한 의견을 청취**하고, **이슈에 관하여 대응논리를 적절히 설파**함으로써 **판사회의가 집행부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**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

▣ 그런데 특히 민사수석부장은 재판업무 부담으로 시간적 여유가 적고, 민사부 전체 판사 수가 지나치게 많아 판사들과 회식 등 접촉기회를 자주 갖기 어려움

○ 기획법관, 공보관을 활용할 수도 있으나, 이들은 판사들과 사법행정권자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여야 하므로, 판사들과 사법행정권자 사이의 직접적 소통을 위해서는 수석부장이 전면에 나서야 함

3. [문제 2] 평정업무 과중 및 평정자료 편중 우려

▣ 연임심사 강화 및 각종 선발성 인사 ⇨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

○ 수석부장은 사법통계 외의 방법으로 법원과 판사들의 사정을 파악함으로써 사

법통계에 의존하기 쉬운 법원장을 보좌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

▣ 그런데 특히 민사수석부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사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기회를 충분히 갖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민사부 전체 판사 수가 지나치게 많아 **판사들의 개별적 사정을 파악하는 데 한계**가 있음 ⇨ 단독판사의 경우 **통계**, 배석판사의 경우 **재판장 의견서**에 **의존**하게 될 우려가 있음 ⇨ **평정자료의 편중** 문제

▣ 또한, **평정 시기**인 11월 ~ 12월에는 **평정표 초안 작성 업무가 과중**하여 **재판업무를 전부 주심판사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**이라고 함

4. [문제 3] 수석부장 경제적 부담

▣ 현재 고법부장인 지방법원 수석부장에게는 **소속 판사 수와 상관없이** 직책수행경비 월 1,125,000원, 사법행정활동비 월 600,000원이 지급되고 있음

▣ 그런데 중앙 민사수석부장의 경우 소속 판사 수가 220여 명에 이르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예산 지원으로는 회식, 경조사 등을 감당할 수 없음

○ 現 ○○○ 수석부장은 재산이 많아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하나, 前 ○○○ 수석부장은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려짐

▣ 법원장이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원을 해 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, 그것만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부족함

V. 서울중앙 수석부장 재편 방안

1. 3인 수석부장 체제 유지 ⇨ 민사수석부장 재판업무 경감

▣ 내용

○ 현재의 민사/파산/형사 3인 수석부장 체제를 유지하되, 민사수석부장의 재판업무를 경감하는 방안

○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신청합의부는 2개 재판부(50부, 51부)로 이루어져 있는데, 각각 3인 배석 체제임(출산, 연수 예정인 판사를 추가로 배치하기도 함) ⇨ **민사 52부를 신설**하여 재판부를 3개로 하고(지법부장 1명 증원), **50부는 2인 배석(1인은 공보관)**, 51부는 3인 배석, 52부는 2인 배석 체제로 하여 **50부 재판업무 비중을 현행의 1/3 수준**으로 낮추는 방안

	50부(수석부)	51부	52부
재판장	고참 고법부장	지법부장	지법부장
배석	2인 (이 중 1인 민사공보관)	3인	2인
사무분담	임시지위가처분	임시지위가처분 +계쟁물가처분	임시지위가처분
비고	현행 50부 업무의 1/3	현행과 같음	현행 50부 업무의 2/3

▣ 장점

○ 민사수석부장의 재판업무 경감 ⇨ 이로써 확보한 시간을 소속 판사들과의 내부 소통에 투입할 수 있음

▣ 단점

○ **220여 명에 이르는 과다한 인원을 관장하는 문제**는 해결되지 않음

⇔ 금전적 문제는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(예산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 필요)

○ 임시지위가처분 사건을 3개 재판부가 나누어서 담당하게 됨 ⇨ **민사수석부의 임시지위가처분 사건의 전문성 약화** ⇨ 중요 가처분 사건 재판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우려

- 법관의 전문성은 처리사건의 양과 질에 달려있는 측면이 큼

- 서울중앙지법에는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한 가처분 사건이 적지 않고, 임시지위가처분의 성격상 본안재판까지 가지 않고 가처분 재판 결과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, 재판부의 권위,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함 ☞ 종래에는 실력과 인품이 검증된 고참 고법부장이 민사수석부장을 맡고, 민사수석부에서 주요 임시지위가처분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함으로써 권위와 전문성을 확보하였음

2. 3인 수석부장 체제 유지 ⇨ 민사단독 총괄판사 신설

▣ 내용

○ 현재의 민사/파산/형사 3인 수석부장 체제를 유지하되, **민사수석부장 밑에 민사단독 총괄판사를 신설**하여 **민사단독재판부 관련 수석부장 업무 위임**

- 민사단독 총괄판사는 **법원장의 사무분담권** 행사로 정함(지법부장급으로 보임하되, 본인도 민사단독 일부 담당)

- 민사단독 총괄판사는 민사단독 판사들과의 소통 업무를 담당하고, 비공식적으로 평정업무에도 관여

○ 민사수석부장은 민사합의부·항소부(2016. 4. 1. 기준 128명) 관장하고, 민사단독 총괄판사는 민사단독재판부(단독부장 포함, 2016. 4. 1. 기준 102명) 관장

▣ 장점

○ 민사수석부장의 행정업무, 소통업무 경감

○ 민사단독 총괄판사는 단독판사들과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 보임 ⇨ 내부 소통 역량 강화

▣ 단점

○ 민사단독 총괄판사를 법원장의 사무분담권 행사로 정하는 것이라면 총괄판사의 **역할 수행에는 한계**가 있음

- 다른 민사단독 판사들이 볼 때에는 **종래의 선임판사와 큰 차이가 없다**고 생각될 수 있음

- 평정업무를 일부 담당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다른 민사단독 판사들에게 공개 곤란

○ 경선으로 선출된 **단독판사회의 의장과 사이에 알력**이 생길 우려

○ 민사단독에만 총괄판사를 둘 경우 **사법행정에 가장 비판적인 민사단독 판사들을 장악, 통제하려는 의도로 오해**될 우려

⇔ 합의부·항소부에도 총괄부를 두는 방안, 형사단독에도 총괄판사를 두는 방안 등 검토

3. 민사수석부장 이○○ ⇨ 제1민사수석부장, 제2민사수석부장

▣ 내용

○ 민사수석부장을 제1민사수석부장, 제2민사수석부장으로 나누는 방안

○ 현재 서울중앙지법 신청합의부는 2개 재판부(50부, 51부)로 이루어져 있는데, 각각 3인 배석 체제임(출산, 연수 예정인 판사를 추가로 배치하기도 함) ⇨ 민사 52부를 신설하여 재판부를 3개로 하고(고법부장 1명 증원), 각각 2인 배석 체제로 하는 방안

	50부(제1수석부)	51부(제2수석부)	52부
재판장	고참 고법부장	고법부장	지법부장
배석	2인	2인	2인
사무분담	임시지위가처분	임시지위가처분	계쟁물가처분 + 항고
수석부장 관장 영역	합의부·항소부 재판장, 배석판사	단독재판부 재판장	
수석부장 관장 인원 (2016. 4. 1. 기준)	128명	102명	

▣ 장점

○ 민사수석부장의 **재판업무, 행정업무 대폭 경감** ⇨ 이로써 확보한 시간을 내부 소통에 투입

○ 민사수석부장의 **관장인원도 대폭 감축** ⇨ 고법부장이 수석부장을 맡고 있는 다른 지방법원의 경우와 균형 맞출 수 있고, 별도의 예산 지원 강화 불요

○ **고법부장 1인 증원** 효과

- 「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」 제2조는 고법부장급 이상 법관의 보직 중 하나로 단순히 '서울중앙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'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 개정 불요

○ 제2수석부장은 단독판사들과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 보임 ⇨ 내부 소통 역량 강화

▣ 단점

○ 수석부장 1인 증가에 대하여 판사들이 사법행정권의 강화 움직임으로 받아들일 가능성

○ 수석부장이 4명이나 됨 ⇨ 수석부장 간 관계 설정의 어려움

⇔ 제2민사수석부장이 말석이 될 것이므로, 현행과 별 차이 없음

4. 총괄 수석부장 신설 ⇨ 사실상 부원장 역할

▣ 내용

○ 현재의 민사/파산/형사 수석부장 외에 총괄수석부장을 신설하는 방안

○ 총괄수석부장은 1차 복귀 법원장 중에서 보임하여 사실상 부원장과 같은 지위에서 중앙지법 사법행정업무 전반에 관여하고, 그 밖에 민사부 판사들과의 소통업무도 분담

▣ 장점

○ 민사수석부장의 행정업무, 소통업무 경감

○ 1차 복귀 법원장의 사법행정 경험 활용

▣ 단점

○ 현행 법원조직법상 **복수의 수석부장을** 수평적으로 두는 것 외에 **수직적으로 둘 수 있는지** 의문

○ 판사들에게 **사법행정권의 강화 움직임**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큼

○ 총괄수석부장은 **옥상옥**의 직위가 되어 오히려 **사법행정의 비효율**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

○ 총괄 수석부장과 민사/파산/형사 수석부장의 관계 설정 어려움

○ 민사수석부장의 주된 업무는 재판업무가 되어 그 위상이 일반 신청합의부 재판장 정도로 약화될 수 있음

5. 민·형사 수석부장 재편 ⇨ 1심 수석부장(2), 항소심 수석부장

▣ 내용

○ 민・형사의 경우 수석부장을 민사부와 형사부로 구분하지 않고, **심급별로 구분**하는 방안(파산수석부장은 종래와 같음)

○ 1심과 항소심에 각각 수석부장을 두되, 1심에는 영역별로 2명의 수석부장을 두는 방안임

- 1안 : 1심 민·형사 합의재판부 vs 1심 민·형사 단독재판부
- 2안 : 1심 민사부 vs 1심 형사부

	항소심 수석부장	1심 제1수석부장	1심 제2수석부장
관장 영역	**민·형사 항소부**	[1안] **민·형사 합의부**	**민·형사 단독(부장 포함)**
		[2안] 민사 합의/단독	형사 합의/단독
사무분담	민사 또는 형사 항소	[1안] 임시지위가처분	형사 재정합의
		[2안] 임시지위가처분	형사 신청합의
관장 인원 (2016. 4. 1. 기준)	45명	[1안] 140명	131명
		[2안] 203명	68명

▣ 장점

○ 서울중앙지법 1심과 항소심의 사법행정 분리 ☞ 항소법원 대비

○ **고법부장 1인 증원** 효과

- 「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」 개정 불요

▣ 단점

○ 1심 수석부장을 합의재판부와 단독재판부로 구분할 경우(1안) 단독재판부 수석부장을 단독부장으로 보임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, 고법부장인 수석부장의 위상에 맞을지 의문

⇔ 단독재판부 수석부장은 지법부장으로 보임하는 방안(「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」 개정 필요)

○ 1심 수석부장을 합의재판부와 단독재판부로 구분할 경우(1안) 각 수석부장은 민・형사 전부 담당하게 되므로 재판 관련 사법행정의 전문성, 효율성이 약화

될 우려가 있음

- 민사부/형사부 워크숍, 민사부/형사부 각종 연구회는의 운영 문제

- 민·형사 구분되어 있는 다른 사법행정 조직·기능과 궤가 맞지 않음

○ 1심 수석부장을 민사부와 형사부로 구분할 경우(2안) 민사부 인원이 203명에 달하여 1심 민사부 수석부장의 업무 부담이 매우 큼 ☞ 현행 체제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음